

PPA고객 신청 접수증명서

접수번호		계약번호			
발전사업자	고객명	(**스	발전소명	저성1호 태양광발전소	
	내인번호		전화번호		
	주소	지번	충청북도 단양군		상업운전희망일
		도로명			2024-03-15

발전원	01 태양광	계약전력	99
공급방식	738 삼상4선(220/380V)	공급전압	380V
설치장소	충청북도 단양군 저성면 ***		
설비용량	99.375	설비유형	3 일반선로(한선)
고객구분	03 발전사업자	적용약관(규정)	개별전력수급계약(PPA)
전력거래형태	한전거래		
사용전 점검기관	3 안전공사(자가용/전기사업용)	공급설비 공사업체	[REDACTED]
시설부담금	1 표준시설부담금		공중(), 지중()
설비관리자명	[REDACTED]	연락전화	[REDACTED]
SMS 수신번호	[REDACTED]		

※ PPA 신청시 발전사업자 확인 내용

- PPA 신청서내용 및 관련규정을 준수할 것을 동의하였으며, 위와 같이 PPA 신청을 합니다.
- 접수가 취소되는 경우
 - 한전의 접속방안 안내 후 1개월이 되는 날까지 접속섭 협의에 불응하거나 추가자료를 미제출한 경우
 - 접속공사비 청구서 발행일부다 30일까지 미입금하여 입금최고권 받았으나, 최고후 7일까지 미입금한 경우
 - 개발행위허가 대상임에도 비대상으로 허위 접수한 경우
 - ※ 접수시 제출한 비대상 여부가 변경되었을 경우 이전 접수는 효력을 잃고, 전력구입계약 신청을 재접수한다.
 - 신청자가 접속공사비 입금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접속공사 착공에 불응하거나 지연할 경우
 - 준공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했음에도 신청자의 사유로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
 - 발전사업허가 용량과 실제시설용량의 차이가 10%를 초과하였으나, 신청자가 사업허가용량이나 실제시설용량을 변경하지 않는 경우 (사업용 전력구입계약에 한함)
 - 발전사업허가의 사업준비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 (사업용 전력구입계약에 한함)
- PPA 신청접수 후 상기의 사유로 신청이 취소된 경우는 취소일로부터 1개월 이내 재접수가 불가능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03월 08일

충북본부 단양지사장



위와 같이 PPA 신청이 접수되었음을 증명합니다.

융자금 대출심사가능 사전확인서

아래의 신청자는 필요한 자금을 대해 대출심사가 가능한 자임을 확인합니다.

- 아 래 -

◆ 신청자(업체명) : 적성 1호 태양광발전소 (대표자: (주)제 [redacted])

◆ 투자지 주소 : 충청북도 단양군 [redacted]

◆ 대상 시설명 : 적성 1호 태양광발전소 / 97kW

◆ 융자신청 예정금액 : 150백만원

◆ 담보물건 확보 예정액

(단위: 백만원)

동 산	부동산	신용보증기금	기타 담보
	○		

* 동 사전확인서가 대출승인 확정은 아니며, 대출심사 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2024 년 월 일

[redacted] 지점
(주) 새마을금고)

(인)

귀하

처리부서명	경제과
담당자명	[redacted]
전화번호	043- [redacted]

발전사업 허가증

- 성명 (대표자): 주식회사 제 [redacted] 법인등록번호 : [redacted]
- 상호: 적성1호 태양광발전소
- 소재지: [redacted]
- 사업의 내용: 태양광 발전사업
사업장소: 단양군 [redacted]
- 사업규모
원동력의 종류: 태양광 설비용량: 97 KW
공급전압: 380 V 주파수: 60 Hz
- 특정공급구역: 해당없음
- 사업준비기간: 2024년 03월 06일 ~ 2025년 09월 05일
- 허가조건:
- 기타:

「전기사업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발전 사업을 허가합니다.

2024년 03월 06일

단 양 군



PPA고객 신청 접수증명서

접수번호			계약번호		
발전사업자	고객명	(**스		발전소명	적성2호 태양광발전소
	대인번호			전화번호	
	주소	지번	충청북도 단양군		상업운전희망일
도로명				2024-03-15	

발전원	01 태양광	계약전역	99
공급방식	738 삼상4선(220/380V)	공급전압	380V
설치장소	충청북도 단양군 적성면 ***		
설비용량	99.375	설비유형	3 일반선로(한선)
고객구분	03 발전사업자	적용약관(규정)	개별전력수급계약(PPA)
전력거래형태	한전거래		
사용전점검기관	3 안전공사(자가용/전기사업용)	공급설비공사업체	
시설부담금	1 표준시설부담금		공중Q), 지중()
설비관리자명		연락전화	010-8473-****
SMS 수신번호			

※ PPA 신청시 발전사업자 확인 내용

- PPA 신청서내용 및 관련규정을 준수할 것을 동의하였으며, 위와 같이 PPA 신청을 합니다.
- 접수가 취소되는 경우
 - 한선의 접속방안 안내 후 1개월이 되는 날까지 접속설 협의에 불응하거나 추가자료를 미제출한 경우
 - 접속공사에 청구서 발행일로부터 30일까지 미입금하여 입금최고를 받았으나, 최고후 7일까지 미입금한 경우
 - 개발행위허가 대상임에도 비대상으로 허위 접수한 경우
- ※ 접수시 제출한 비대상 여부가 변경되었을 경우 이전 접수는 효력을 잃고, 전력구입계약 신청을 재접수한다.
 - 신청자가 접속공사에 입금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접속공사 작공에 불응하거나 지연할 경우
 - 준공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했음에도 신청자의 사유로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
 - 발전사업허가 용량과 실제시설용량의 차이가 10%를 초과하였으나, 신청자가 사업허가용량이나 실제시설용량을 변경하지 않는 경우 (사업용 전력구입계약에 한함)
 - 발전사업허가의 사업준비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 (사업용 전력구입계약에 한함)
- PPA 신청접수 후 상기의 사유로 신청이 취소된 경우는 취소일로부터 1개월 이내 재접수가 불가능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03월 08일

충북본부 단양지사장



위와 같이 PPA 신청이 접수되었음을 증명합니다.

융자금 대출심사가능 사전확인서

아래의 신청자는 필요한 자금을 대해 대출심사가 가능한 자임을 확인합니다.

- 아 래 -

◆ 신청자(업체명) : 적성 2호 태양광발전소 (대표자 : (주)제 [REDACTED])

◆ 투자지 주소 : 충청북도 단양군 [REDACTED]

◆ 대상 시설명 : 적성 2호 태양광발전소 / 97kW

◆ 융자신청 예정금액 : 150백만원

◆ 담보물건 확보 예정액

(단위: 백만원)

동 산	부동산	신용보증기금	기타 담보
	○		

* 동 사전확인서가 대출승인 확정은 아니며, 대출심사 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2024 년 월 일

[REDACTED]
~~금융업 새마을금고~~ 지점 (인)

[REDACTED] (인)

귀하

처리부서명	경제과
담당자명	
전화번호	043-

발전사업 허가증

1. 성명 (대표자): 주식회사 제 법인등록번호 :
2. 상호: 적성2호 태양광발전소
3. 소재지:
4. 사업의 내용: 태양광 발전사업
사업장소: 단양군
5. 사업규모
원동력의 종류: 태양광 설비용량: 97 KW
공급전압: 380 V 주파수: 60 Hz
6. 특정공급구역: 해당없음
7. 사업준비기간: 2024년 03월 06일 ~ 2025년 09월 05일
8. 허가조건:
9. 기타:

「전기사업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발전 사업을 허가합니다.

2024년 03월 06일

단 양 군



PPA고객 신청 접수증명서

접수번호		계약번호		
발전사업자	고객명	(**스	발전소명	적성3호 태양광발전소
	대인번호		전화번호	
	주소	지번	충청북도 단양군	상업운전희방일
		도로명		2024-03-15

발전원	01 태양광	계약선력	99
공급방식	738 삼상4선(220/380V)	공급선압	380V
설치장소	충청북도 단양군 적성면 ***		
설비용량	99.375	설비유형	3 일반선로(한선)
고객구분	03 발전사업자	적용약관(규정)	개별선력수급계약(PPA)
선력거래형태	한선거래		
사용전점검기관	3 안전공사(자가용/전기사업용)	공급설비공사업체	[Redacted]
시설투담금	1 표준시설부담금		공중(), 지중()
설비관리자명	[Redacted]	연락전화	[Redacted]
SMS 수신번호	[Redacted]		

※ PPA 신청시 발전사업자 확인 내용

- PPA 신청서내용 및 관련규정을 준수할 것을 동의하였으며, 위와 같이 PPA 신청을 합니다.
- 접수가 취소되는 경우
 - 한선의 접속방안 안내 후 1개월이 되는 날까지 접속설 협의에 불응하거나 추가자료를 미제출한 경우
 - 접속공사비 장구서 발행일부터 30일까지 미입금하여 입금최고료를 받았으나, 최고후 7일까지 미입금한 경우
 - 개발행위허가 내상위에도 미대상으로 허위 접수한 경우
- 접수시 제출한 미대상 여부가 변경되었을 경우 이전 접수는 효력을 잃고, 전력구입계약 신청을 재접수한다.
 - 신청자가 접속공사비 입금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접속공사 착공에 불응하거나 지연한 경우
 - 준공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했음에도 신청자의 사유로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
 - 발전사업허가 용량과 실제시설용량의 차이가 10%를 초과하였으나, 신청자가 사업허가용량이나 실제시설용량을 변경하지 않는 경우 (사업용 전력구입계약에 한함)
 - 발전사업허가의 사업준비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 (사업용 전력구입계약에 한함)
- PPA 신청접수 후 상기의 사유로 신청이 취소된 경우는 취소일로부터 1개월 이내 재접수가 불가능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03월 08일

충북본부 단양지사장



위와 같이 PPA 신청이 접수되었음을 증명합니다.

용자금 대출심사가능 사전확인서

아래의 신청자는 필요한 자금을 위해 대출심사가 가능한 자임을 확인합니다.

- 아 래 -

◆ 신청자(업체명) : 적성 3호 태양광발전소 (대표자 : (주)제 [redacted])

◆ 투자지 주소 : 충청북도 단양군 [redacted]

◆ 대상 시설명 : 적성 3호 태양광발전소 / 97kW

◆ 용자신청 예정금액 : 150백만원

◆ 담보물건 확보 예정액

(단위: 백만원)

동 산	부동산	신용보증기금	기타 담보
	○		

* 동 사전확인서가 대출승인 확정은 아니며, 대출심사 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2024 년 월 일

[redacted]
금.용.업 새마을금고

_____ 귀하

처리부서명	경제과
담당자명	
전화번호	043-

발전사업 허가증

1. 성명 (대표자): 주식회사 제 법인등록번호 :
2. 상호: 적성3호 태양광발전소
3. 소재지:
4. 사업의 내용: 태양광 발전사업
사업장소: 단양군
5. 사업규모
- | | | | |
|----------|-------|-------|-------|
| 원동력의 종류: | 태양광 | 설비용량: | 97 KW |
| 공급전압: | 380 V | 주파수: | 60 Hz |
6. 특정공급구역: 해당없음
7. 사업준비기간: 2024년 03월 06일 ~ 2025년 09월 05일
8. 허가조건:
9. 기타:

「전기사업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발전 사업을 허가합니다.

2024년 03월 06일

단 양 군



PPA고객 신청 접수증명서

접수번호		계약번호			
발전사업자	고객명	(**스	발전소명	적성4호 태양광발전소	
	대인번호		전화번호		
	주소	지번	충청북도 단양군		상업운전희방일
		도로명			2024-03-15

발전원	01 태양광	계약전력	99
공급방식	738 삼상4선(220/380V)	공급전압	380V
설치장소	충청북도 단양군 적성면 ***		
설비용량	99.375	설비유형	3 일반선로(한선)
고객구분	03 발전사업자	적용약관(규정)	개별전력수급계약(PPA)
전력거래형태	한전거래		
사용전 점검기관	3 안전공사(자가용/전기사업용)	공급설비 공사업체	
시설부담금	1 표준시설부담금		공중(), 지중()
설비관리자명		연락전화	
SMS 수신번호			

※ PPA 신청시 발전사업자 확인 내용

- PPA 신청서내용 및 관련규정을 준수한 것을 동의하오며, 위와 같이 PPA 신청을 합니다.
- 접수가 취소되는 경우
 - 한선의 접속방안 안내 후 1개월이 되는 날까지 접속성 협의에 불응하거나 추가자료를 미제공한 경우
 - 접속공사비 청구서 발행일부터 30일까지 미입금하여 입금최고할 받았으나, 최고후 7일까지 미입금한 경우
 - 개발행위허가 대상임에도 비대상으로 허위 접수한 경우
- ☞ 접수시 제출한 비대상 여부가 변경되었을 경우 이전 접수는 효력을 잃고, 전력구입계약 신청을 재접수한다.
 - 신청자가 접속공사비 입금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접속공사 착공에 불응하거나 지연한 경우
 - 준공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했음에도 신청자의 사유로 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경우
 - 발전사업허가 용량과 실제시설용량의 차이가 10%를 초과하였으나, 신청자가 사업허가용량이나 실제시설용량을 변경하지 않는 경우 (사업용 전력구입계약에 한함)
 - 발전사업허가의 사업준비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 (사업용 전력구입계약에 한함)
- PPA 신청접수 후 상기의 사유로 신청이 취소된 경우는 취소일로부터 1개월 이내 재접수가 불가능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03월 08일

충북본부 단양지사장



위와 같이 PPA 신청이 접수되었음을 증명합니다.

융자금 대출심사가능 사전확인서

아래의 신청자는 필요한 자급에 대해 대출심사가 가능한 자임을 확인합니다.

- 아 래 -

- ◆ 신청자(업체명) : 적성 4호 태양광발전소 (대표자 : (주)제 [REDACTED])
- ◆ 투자지 주소 : 충청북도 단양군 [REDACTED]
- ◆ 대상 시설명 : 적성 4호 태양광발전소 / 97kW
- ◆ 융자신청 예정금액 : 150백만원
- ◆ 담보물건 확보 예정액

(단위: 백만원)

등 산	부동산	신용보증기금	기타 담보
	○		

* 동 사전확인서가 대출승인 확정은 아니며, 대출심사 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2024 년 월 일

[REDACTED] 지점
(현 본 임 새마을금고)

(인)

귀하

처리부서명	경제과
담당자명	
전화번호	043-

발전사업 허가증

1. 성명 (대표자): 주식회사 제 생년월일 :
2. 상호: 적성4호 태양광발전소
3. 소재지:
4. 사업의 내용: 태양광 발전사업
사업장소: 단양군
5. 사업규모
원동력의 종류: 태양광 설비용량: 97 KW
공급전압: 380 V 주파수: 60 Hz
6. 특정공급구역: 해당없음
7. 사업준비기간: 2024년 03월 06일 ~ 2025년 09월 05일
8. 허가조건:
9. 기타:

「전기사업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발전 사업을 허가합니다.

2024년 03월 06일

단 양 군



PPA고객 신청 접수증명서

접수번호				계약번호				
발전사업자	고객명	(**스			발전소명	적성6호 태양광발전소		
	대인번호				전화번호			
	주소	지번	충청북도 단양군			상업운선회망일		
		도로명				2024-03-15		

발전원	01 태양광	계약전력	99
공급방식	738 삼상4선(220/380V)	공급전압	380V
설치장소	충청북도 단양군		
설비용량	99.375	설비유형	3 일반선로(한선)
고객구분	03 발전사업자	적용약관(규정)	개별선리수급계약(PPA)
선리거래형태	한선거래		
사용전 접속기관	3 안전공사(자가용/전기사업용)	공급설비 공사업체	
시설부담금	1 표준시설부담금		공중Q), 지중()
설비관리자명		연락전화	
SMS 수신번호			

※ PPA 신청시 발전사업자 확인 내용

- PPA 신청서내용 및 관련규정을 준수할 것을 동의하였으며, 위와 같이 PPA 신청을 합니다.
- 접수가 취소되는 경우
 - 한선의 접속방안 안내 후 1개월이 되는 날까지 접속선 협의에 불응하거나 추가자료를 미제출한 경우
 - 접속공사비 청구서 발행일부터 30일까지 미입금하여 입금최고를 받았으나, 최고후 7일까지 미입금한 경우
 - 개발행위허가 내상임에도 비내상으로 허위접수한 경우
- ※ 접수시 제출한 비대상 여부가 변경되었을 경우 이전 접수는 효력을 잃고, 선리구입계약 신청을 재접수한다.
 - 신청자가 접속공사비 입금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접속공사 착공에 불응하거나 지연할 경우
 - 준공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했음에도 신청자의 사유로 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경우
 - 발전사업허가 용량과 실제시설용량의 차이가 10%를 초과하였으나, 신청자가 사업허가용량이나 실제시설용량을 변경하지 않는 경우 (사업용 전력구입계약에 한함)
 - 발전사업허가의 사업준비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 (사업용 전력구입계약에 한함)
- PPA 신청접수 후 상기의 사유로 신청이 취소된 경우는 취소일로부터 1개월 이내 재접수가 불가능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03월 08일

충북본부 단양지사장



위와 같이 PPA 신청이 접수되었음을 증명합니다.

융자금 대출심사가능 사전확인서

아래의 신청자는 필요한 자급에 대해 대출심사가 가능한 자임을 확인합니다.

- 아 래 -

◆ 신청자(업체명) : 적성 6호 태양광발전소 (대표자 : (주)제 [REDACTED])

◆ 투자지 주소 : 충청북도 단양군 [REDACTED]

◆ 대상 시설명 : 적성 6호 태양광발전소 / 97kW

◆ 융자신청 예정금액 : 150백만원

◆ 담보물건 확보 예정액

(단위: 백만원)

등 산	부동산	신용보증기금	기타 담보
	○		

* 동 사전확인서가 대출승인 확정은 아니며, 대출심사 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2024 년 월 일

[REDACTED] 지점
([REDACTED] 새마을금고)

1)

귀하

처리부시명	경제과
담당자명	
전화번호	043-

발전사업 허가증

1. 성명 (대표자): 주식회사 제 법인등록번호 :
2. 상호: 적성6호 태양광발전소
3. 소재지:
4. 사업의 내용: 태양광 발전사업
사업장소: 단양군
5. 사업규모
원동력의 종류: 태양광 설비용량: 97 KW
공급전압: 380 V 주파수: 60 Hz
6. 특정공급구역: 해당없음
7. 사업준비기간: 2024년 03월 06일 ~ 2025년 09월 05일
8. 허가조건:
9. 기타:

「전기사업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발전 사업을 허가합니다.

2024년 03월 06일

단 양 군



건강한 단양 · 살고 싶은 단양



단 양 군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전기사업 허가신청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협의 회신((주)제 [redacted]
 진/2024-27/9,218㎡/태양광/신규)

1. 경계과 [redacted] 호와 관련하여 [redacted] 상 태양광 발전시설 부지 및 진출입로조성을 위한 개발행위허가 신청((주) [redacted] 대표 [redacted] 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6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처리하였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그리고 수허가자께서는 제세공과금을 납부한 이후부터 허가 효력이 발생됨을 유의하여 공과금 납부영수증을 제출(규형개발과 지역계획팀)하여 주시고,
3.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의거 사업시행 중 터파기 등 원지형 변형 시 매장문화재가 발견될 경우 즉시 공사를 중지(현상변경 금지) 하시고 단양군 [redacted] 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4.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에 의거 비산먼지 발생사업에 해당하는 경우 비산먼지 발생 신고를 득한 후 사업을 시행하여야 하고 추가 문의 사항은 환경과 [redacted] 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5. 또한 사업시행 전에 허가 받은 부지에 대한 경계(분할)측량을 먼저 선행한 후 사업을 시행하시기 바라며, 사업부지의 경계지역에 경계말목 등을 설치하여 부지경계를 명확히 표시하고 사업을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개발행위 허가조건 1부.